

[별지 제9호 서식] <개정 2016. 6. 24.>

자동차 · 확성장치 · 녹음기 · 녹화기의 표지



- 주: 1. 표지의 바깥 지름은 자동차 14cm, 확성장치 · 녹음기 · 녹화기 12cm로 하고, 색상과 글씨는 눈에 잘 띄는 것으로 하며, 표지를 붙이는 선전물 등의 종류(자동차 · 확성장치 · 녹음기 · 녹화기)를 표시하여야 합니다.
2. 필요한 경우 표지의 규격을 조정할 수 있으며, 선거관리위원회의 로고를 표시하거나 주민소환투표별로 색상을 달리하여 제작할 수 있습니다.